

## 평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1999. 11 . 19 평창군수(재무과장)

나. 회부일자 : 1999. 12. 20

다. 상정일자 : 제73회 평창군의회(정기회) 제1차조례특위('99.12.21)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신영선)

가. 제 안 이 유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평창군수입증지 조례중에서 부담을 주는 조항을 행정규계 완화측면에서 개정하기 위함.

나. 주 요 내 용

- 판매인 지정 신청을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체결로 조정 (안 제9조 제1항)
- 삭제(안 제9조 제2항)
-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해제시 10일전에 신청서를 제출 토록 한 것을 2일전으로 개정(안제11조 제1항 및 제2항)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허해성)

- 본 조례 개정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 1999.1.29일 법률 제5695호로 판매인의 지정제가 계약제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하여 판매인의 폭을 확대하였고, 판매신청서와 판매소 이전, 판매인의 명의변경, 위치변경, 판매해제시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행정간소화하여 판매인의 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 개정사항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별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붙 임 : 평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 끝 .